

전주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2가단294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중양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

담당변호사 김진모, 하동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진

변 론 종 결 2024. 8. 29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7.

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61,285,2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61,285,21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5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3 지분 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2. 7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22. 7. 28. 접수 제5497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, 피보전채권의 존재, 사해행위 성립여부, 사해의사 및 인정근거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피고는 C의 고모로서 C와 그 처 D에게 미지급 농약대금 및 대여금 등 365,726,550원의 채권이 있는데,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, C의 재산상태의 악화 여부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항변을 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C와 농약 거래를 하여 농약 대금이 미납된 것도 있는 사실, C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수회 작성하여 준 사실, 피고가 C의 처 D와 사이에 금융거래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,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C의 고모인 점, ② 피고가 C와 오랜 기간 농약 거래를 하는 등 C의 농업 상태 및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, ③ 이 사건

매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전라북도 무주군 E, F 및 G 토지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다는 점, ④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2016. 2.경 발생하기 시작한 채권을 2022. 7.경에서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나.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4.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기재와 같다.

3. 결론

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관용

별지